

법관 박상언 탄핵소추안

의 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주 문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박상언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상언

직 위 : 법관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박상언(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신분보장 (헌법 제10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 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검찰의 기소 후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2016. 2 ~ 2017. 5. 대법관 겸임), 임종현(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중 사법에 관한 본질적 요소인 재판독립의 원칙과 법관의 신분보장,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2003.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하여, 2006. 2.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를 거쳐, 2014. 2.경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5. 2. 23.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고, 2016. 2. 22.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면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으며, 2017. 2. 20.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직위에 대한 겸임이 해제되었다. 이후 피소추자는 2018. 2. 26.자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8. 6.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회부되었고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된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2. 피소추자의 행위

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 1)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2015. 3. 18.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였고, 2015. 4. 6.에는 성완종 전 경남 기업 회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완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015. 4. 9. 예정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위 성완종은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다음 날인 2015. 4. 10. 검찰은 위 성완종의 상의 주머니에서 허태열 전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지사, 홍문종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 8명의 이름과 금원이 적힌 종이¹⁾가 발견되었다.

- 2) 임종헌은 위 성완종이 사망한 이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정치적 의미와 사법부에 미칠 영향 등의 분석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소추자는 2015. 4. 12.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152] 문건²⁾을 작성하였다[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이하 ‘3차보고서’라 함) 169쪽].

- 3) 본 문건은, 성완종 리스트가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청와대와 협조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리스트 수사와 관련하여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이 없으며, 이미 계속 중인 주요 관심사건의 처리에서 청와대 측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청와대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하며,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

1) 이 종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언론에 회자되었다.

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법원행정처는 2018. 6. 5. 및 2018. 7. 5. 두 차례에 걸쳐 위 특조단의 물적 조사 대상이 된 문건 다수를 공개하였다. 본 소추안에서 공개된 문건을 인용하는 경우, 최초 문건명 및 대괄호 안 문건 번호(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첨부 2. 기재 순번)을 병기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대괄호 안 문건 번호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이하 모두 같다.

적으로 가동하여야 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4) 본 문건 중, 특조단이 3차보고서에서 ‘사법행정권의 남용 의혹’이 있다고 특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p>4. 對사법부 영향 및 대응방향 분석</p> <p>가.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적 영향 ⇨ 부정적</p> <p>▣ 국정 이슈에서 후순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부 및 BH의 관심 우선순위에서 ‘성완중 리스트’ 및 대선자금 등의 이슈에 압도될 가능성 큼 ● 상고법원 등의 이슈가 ①현재로선 <u>여론의 높은 지지를 등에 업은 것은 아니고</u>, ②국민 실생활에 당장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정치권 인식도 미흡하기 때문임 ● 급박한 정치지형하에서 합리적인 장점 설명 및 설득에도 어려움 예상 (중략) <p>라. 對BH 및 對입법부 협조 및 우호관계 유지 방안</p> <p>▣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협조 방안 ⇨ 당분간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 없음 <p>▣ 이미 계속 중인 주요 관심사건 처리 ⇨ BH측의 입장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 유지</p>
<p>☑최근 관심 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한 판결 ▶ VIP의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는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한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권의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u>사법부가 적정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u>관심 사안의 적정한 처리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 교조 법외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 등

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 1)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2011. 8.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이다.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라 함)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소모임으로, 2015. 7. 내지 8.경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거쳐 2015. 9.경 첫 정식 모임을 가지고 발족하였다. 인사모는 위 예비모임 당시부터 상고법원 문제를 포함하여, 합의부의 조직과 운용, 사실심 충실화,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 폐지 등 사법부 내 사법 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여 왔다.
- 2)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모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무렵이었던 2015. 7.경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인사모를 챙겨보라’, ‘윤리감사관실의 검토도 거쳐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후 이규진은 본인 스스로 혹은 피소추자 등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박병대의 인사모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였다. 나아가 2016. 3.경 무렵, 법원행정처는 임종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도 아래 전문분야연구회 개편 등을 명목으로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인사모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동향을 파악하거나 인사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를 위축시키거나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수의 행위를 하였다.
- 3)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6. 12.경부터 인사모를 주축으로 하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법관인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규진은 2016. 12. 24.경 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요 회원들을 통하여 공동학술대회의 발제자 및 논의 주제 등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규진은 인사모 대표 등에게 학술대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17. 1. 3.경 실장회의 및 2017. 1. 13. 처장 주례회의에서 위 학술대회의 추진경과와 대응방안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4) 이러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2017. 1.경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17. 3. 25. 공동학술대회의 개최를 결정하였다. 이에 이규진은 2017. 1. 24. 연구회 기획팀장 이 모 판사에게 전화하여 이 모 판사 등 연구회 회원 2명의 심의관 추천을 거론하고 행정처에서 같이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 ‘공동학술대회가 법원 내부행사로 치러지도록 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5)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인사모 2차 예비모임³⁾에서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2] 문건을 2015. 8. 24.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23쪽).

당시 임종헌은 인사모가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피소추자에게 인사모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본 문건을 작성하였다.

인사모 2차 예비모임의 토론 결과는 2015. 8. 19.경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수가 현행 상고제도를 유지하면서 심리불속행제

3) 당시 인사모 2차 예비모임의 주제는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이었다.

도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고법원 논의에 회의적이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기였으며, 2015. 5. 경 개최된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정기세미나를 계기로 행정처에서는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을 포착하고,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될 경우 입법 추진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본 문건은, ○ 인사모의 문제점을 ① 논의 주제가 연구회와 관련이 없어 관련 예규에 위배되는 점, ② 인적 구성 및 정치적 성향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하여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 내·외부에 표출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소장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정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점으로 분석하고, ○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검토하면서 단계적 접근방식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81] 문건을 2016. 3. 25.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⁴⁾하였다(3차 보고서 29쪽).

본 문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허가받은 전문분야를 이탈·무시하였고,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시도하였으며, 일부 강경·핵심세력이 연구회 및 사법부 전체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 대책으로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중복가입 금지규정의 규범력 강화를 통한 중복가입자 정리,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영역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복가입자 정리 문제와 관련하여, 당해 방안

4) 임종헌은 위 [181] 문건을 ‘전문분야 개선 방안’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으로 내용을 나누어 2개의 문건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위 [181] 문건을 ①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2] 및 ②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5]로 나누어 2016. 4. 7. 각각 이를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41쪽).

은 “법관들 상대로 명분이 있”고, “행정처의 정무적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으며, “‘인사모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로서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위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시행에 따라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가장 큰 위축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인사모의 자연 소멸’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 또한 기재되어 있다.

본 문건과 관련하여, 임종헌은 특조단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인사모가 행정처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인사모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문건의 작성 배경과 관련하여, 당시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과 인사모 견제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으나, 인사모에 대한 견제에 좀 더 주안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소추자는 2016. 5. 31.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309]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42쪽).

본 문건은 앞서 살펴본 [181] 문건에서 제시한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방안에 대한 후속 문건으로, “특정 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행 연구회 판도에 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9월 이전에 ‘미디어 분야 연구회’가 설립 완료되도록 행정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법관 중에서 유력한 회장 및 회원 후보군을 분석하고 권유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을 기재하였다.

라) 피소추자는 2017. 1. 24.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312]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등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53쪽).

본 문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학술대회 개최일자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7. 1. 23. 익일에 작성된 것으로, 위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로드맵을 작성하라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본 문건은 인사모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 공동학술대회 대응 중심의 ‘단기 방안’과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 중심의 ‘중기 방안’을 제시하면서, ○ 인사모 해소 방안으로서 ‘중복가입 해소 요구’는 규범 준수 요구라는 명분이 충분하고, 중복가입자 일제 해소시 인권법연구회 회원 50%가 넘는 200명 이상이 급감하여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현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나.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 1) ‘이판사판야단법석’(이하 ‘이사야’라 함)은 다음(Daum)에 개설된 카페로, 익명에 의한 사이버 공간에 판사들 사이의 소통을 목적으로 2014. 10.경 개설되었다. 이사야의 초기 회원은 약 40여명 정도였으나, 2015. 2. 기준 384명에 달하는 회원이 가입할 정도로 확장되었으며, 게시글과 댓글은 모두 익명으로만 이루어진다.
- 2) 이사야에는 업무 관련 사항, 인사연수 정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 뿐만 아니라 법원 인사,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상고법원 문제 등 사법부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도 다수 게재되었다. 임종헌은 위와 같이 이사야의 회원과 회원 작성 글이 늘어나던 2015. 2.경 이사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하면서, 피소추인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에게 이사야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3) 위 이사야 관련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령은 받았으나 아직 부임하기 이전임에도, 임종헌 등의 지시에 따라 2015. 2. 15.경,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355]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당시 정다주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74쪽).

본 문건은 이사야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①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는 실명화를 권유하는 방안, ②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③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를 하는 방안, ④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나)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한 후인 2015. 3. 9.경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29]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78쪽). 나아가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위 [29] 문건을 업데이트하여, 2015. 4. 6.경 「이사야 익명 카페 동향 보고」 [30]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79쪽).

[29] 문건은, 이사야 카페의 가입회원 수, 방문회원 수, 전체글 수 등 활동 추이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주제의 글 수 등을 질적으로 분석하면서, 카페 운영자에 대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및 선배·동료 법관들을 통한 권고 등을 검토하고, 권고의 내용으로 카페 게시글에 대한 운영진의 선별 삭제, 일정기간 이후 일괄 삭제, 일정기간 경과시 일괄 비공개 처리 등을 검토하였다.

[30] 문건은 위 [29] 문건의 내용 중 양적/질적 분석을 최신화하면서, “카

폐 전반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 시행 시까지 신속보고 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다)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2015. 8.경 「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조치」[31] 문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82쪽).

본 문건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장과 이사야 개설자인 판사가 면담을 진행한 이후, 위 개설자 판사에게 이사야 카페에 게재할 공지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 공지글의 초안을 기재하였다.

다.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 6.경 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로부터 상고법원 설치를 건의받았다. 법원행정처는 2014. 9.경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2014. 10.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상고법원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14. 12.경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의 연명으로 상고법원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2) 상고심 제도의 개선은 사법부의 주요한 변화이므로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이 법원행정처가 주도하여 추진하였던 상고법원안은 국민주권주의의 불충분한 실현,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법관 등 사법부 내부로부터 상고법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자, 이를 견제할 목적으로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을 하기에 이르렀다.

3)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2015. 7.경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346] 문건의 주된 내용을 작성하였다(3차보고서 96쪽).

본 문건은, 상고법원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 핵심 그룹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지목하고 이들을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불안요소로 평가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선제적 대응 방안의 전제로 구체적인 정보 수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핵심세력과 움직임의 목적, 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 중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서 핵심 그룹을 접촉하여 유화·설득·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나)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2015. 7.경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36] 문건의 일부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97쪽).

본 문건은, 상고법원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른바 ‘돌출행동’의 위험성이 높은 법관들의 상고법원 관련 반대 입장 등이 외부로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제적인 설득이 필요하며, 설득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표방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위기 대응체제’를 가동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 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또한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불리한 처분이란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일상적인 법관 사찰, 자발적인 법관들의 연구 모임을 위축시키려는 조치 등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과 헌법 제106조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

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 보장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나. 3차 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조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적어도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의 행위는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②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③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④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등으로 나뉘는바,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1) 피소추자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관련 행위

피소추자가 작성한 [152] 문건과 관련하여, 특조단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이것이 상고법원의 입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측하고 청와대와 협조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영장의 적정한 발부를 통한 협력’, ‘계속 중인 관련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의 적극 가동’을 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는 것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이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저버리고 청와대와 적절하지 못한 유대·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라 평가하였다.

2) 피소추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행위

이에 대하여, 특조단은 “특정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종헌 차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차보고서 48쪽).

또한 “임종헌 차장은 기조실 등을 통하여 2016. 3.경부터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 내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2017. 2.경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시행되었는바, 이는 법관들의 학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차보고서 58쪽).

따라서 피소추자가 법원 내 공식적·자율적으로 결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의 활동을 견제하고 나아가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2], [181], [12], [5], [309], [312] 등의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한 것은, 특조단의 보고서에 기재되었듯이, 그 자체로 실행행위로 나아갔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헌법,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피소추자의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관련 행위

이에 대하여, 특조단은 “행정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이사야의 분위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할 것을 논의하고, 마치 이사야 회원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처럼 하여 그와 같은 글을 실제로 게시하며,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후 이사야의 동향을 파악한 일련의 행위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그 목적의 정당성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적정하다고 할 수 없어,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소추자가 작성한 [355] 문건과 관련하여, 특조단은 “이사야에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역시 그 수단이 적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방안을 검토한 것은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 판단하였다. 또한 피소추자가 작성한 [31] 문건에서 확인되는 사항, 즉 “카페 운영자에게 게시할 공지글 초안까지 작성하여 전달”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서 부적절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차보고서 87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소추자가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와 관련하여 [355], [29], [30], [31] 문건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성한 행위는 법관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피소추자의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관련 행위

이에 대하여, 특조단은 “행정처는 주로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파악하였다고 보이고,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 그룹이라고 분류하면서 그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동향을 파악하거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고 전제하면서, “이와 같은 행정처의 동향 파악이나 대응방안 검토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각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이라고 보

기 어렵고, 리스크 센싱의 관점 즉,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장애가 된다고 보이는 것은 모두 위험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동향 파악이나 대응방안 검토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에 전제된 위와 같은 인식이나 관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평가하였다(3차보고서 99쪽).

특히 [346] 문건에 대하여, 특조단은 “이 문건은 인사모 예비모임 제안 무렵인 2015. 7. 6.경 작성된 것으로서 이 문건에 기재된 대응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는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내부 동향을 파악하여 왔다고 보이고, 인사모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그와 같은 내부 동향 파악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하였다(3차보고서 97쪽).

5) 소결

이상과 같이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등의 지시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채 철저히 법원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순히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나 부적절한 정도를 뛰어넘어 법관에 대한 사찰 등과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였다.

따라서 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헌법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4. 탄핵의 정당성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 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대)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

를 분담하였던 점, 피소추자가 침해한 대상은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의 행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큰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그 징계양정의 최대는 정직 1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소추자와 같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사법부 내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으로 발탁된 법관들이 ‘사법관료’로 변모하여 추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 등 고위 법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다. 피소추자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가 법관징계법상 최장 1년의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재판장으로 복귀한다면,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법관 정다주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들로 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

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박상언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첨부 2.
기재 문건 중 아래 가항 내지 파항
 - 가. [2] (150823)인사모대응방안(기조심의관)
 - 나. [5] (160407)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모관련추가) [박■■■]
 - 다. [12] (160407)전문분야연구회일반개편방안[박■■■]
 - 라. [29] (150309)인터넷활동대응방안권고의견대비
 - 마. [30] (150406)인터넷활동동향
 - 바. [31] (150814)홍○○판사와법원장면담후속조치
 - 사. [36] (150706)상고법원에대한사법부내부이해도심층화방안
 - 아. [152] (150412)성완종리스트영향분석과대응방향검토
 - 자. [181] (160325)전문분야연구회구조개편방안[박■■■]
 - 차. [309] (160531)법원_미디어_연구회 설립방안_로드맵
 - 카. [312] (170124)인사모 관련 검토+1 [박■■■]
 - 타. [355] 2078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